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7월 11일

나. 발 의 자: 김춘남 의원 (1인)

다. 찬 성 자: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양진오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의원 (15인)

라. 회부일자: 2025년 7월 14일

마. 상정일자: 2025년 7월 16일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춘 남 의원

나. 제안이유

- 최근 대구시와 정부에서 안동댐뿐만 아니라 우리시 해평

취수장에 대한 물공급을 다시 검토하는 등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지난 3월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노후 산단을 미래 50년을 열어갈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이와 함께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공단과 도시를 아우르는 재생 사업도 활발히 추진중에 있음. 이처럼 향후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시의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방향 설정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구성인원: 9명(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7명)
- 존속기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 활동내용
  - 우리시 해평취수원 활용 방안
  - 해평취수원 사용에 따른 우리시 대응과 정부대구시와의 협력 방안
  - 문화선도산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 문화선도산단 추진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방안
  - 도시 및 공단 등 재생 사업의 활성화 방안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재 환

#### ○ 본 구성결의안은

- ◆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정 안전에 대한 심사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지역 현안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공단과 도시를 아우르는 재생사업,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 및 구미 취수원 사용에 따른 우리시의 협력 방안 등 구미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사항 앞에서 우리시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제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 안전별 소속 상임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과 함께 전문위원실의 업무 분장 명확화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